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키우고자 서울시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문서번호	감사팀-167
보존기간	준영구
결재일자	2016.03.04.
공개여부	공개
방침번호	대표이사 방침 제(129)호

★팀장	실장	대표이사
협 조		
경영기획본부장 팀장 차장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박원순법』 확산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하고,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 등에 불문하여 임직원의 부패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자 함

I 임직원 행동강령

- 연혁: 2007. 10. 9.일 제정 이후 6차례 개정
- 구성: 행동강령 조항(제1~37조), <별지 제1~9호>
- 목적: 부패방지 및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서울문화재단의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의 기준을 정함

II 개정 근거 및 배경

- 서울특별시 감사담당관-1560호 “시 산하기관 『박원순법』 확산계획 통보”
-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제12조 (2016.2.18. 일부 개정)

III 주요 개정 내용

- 알선·청탁, 금품 등의 수수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성·대가성 여부 등 요건 삭제

IV 행동강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 <p>① <생략></p> <p>② 임직원은 <u>직무수행과 관련하여</u>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p>

현 행	개정안
<p>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①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부동산·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5. <생략> <신설></p> <p><신설></p> <p>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 <신설></p> <p>②임직원은 직무관련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4. <생략></p> <p>③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재단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5조(금품등의 수수 제한) 임직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후원 등 명목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5. <현행과 같음></p> <p>6. 직원 상호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p> <p>7.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p> <p>8.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대표이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금품 등</p> <p>9. 그밖에 법령 또는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p> <p><삭제></p> <p><삭제></p> <p>제17조(금품등 제공 금지) 임직원은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5조 단서에서 정한 금품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V 후속 조치사항

- 2016. 3월: 대표이사 승인을 득한 날로부터 시행
- 2016. 3월: 개정된 내용은 차기 이사회에 보고

붙임: 『서울문화재단 임직원 행동강령』 및 개정(안) 각 1부. 끝.